
이동서비스 수칙

학수정데이케어센터

이동서비스 안전수칙

■ 기관안전 수칙 목표

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만들어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

■ 운전자 및 동승자

구분	요건 및 역할
운전자 자격요건	■ 운전자는 차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■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■ 차량에는 차량검사증, 자동차보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. 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 합니다. ■ 운전자는 매일 차량에 대하여 기본 점검을 합니다.
동승자의 역할	■ 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지는 확인 합니다. ■ 승하차를 지도하고, 안전하게 착석 후 차량출발. 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및 안전을 확인 합니다. ■ 이동서비스 시작에서 종료 시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수인계 합니다. ■ 차를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안전을 확인한다.

이동서비스 안전수칙 10계

하나, 이동서비스 이용 시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차량 탑승 시 뛰지 않기
둘, 차량 탑승 후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기
셋, 차량에 탑승 후 내릴 때까지 안전띠를 착용하기
네,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 후 일어서기
다섯, 차량에 탑승 후 큰소리로 말하지 않기
여섯,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리기
일곱, 차량에서 내린 후 차도로 횡단하지 않기
여덟, 차량 탑승 시 가방은 어깨에 메고 타기(양손 사용 자유롭게)
아홉, 차량 탑승 시에는 끈이 있는 옷의 착용을 지양하기
열, 우천시 차량탑승 시 우산이나 우비 등이 차량에 끼지 않도록 유의하기

■ 차량안전수칙

- 1) 차량운전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으며,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.
- 2) 승인없이 지정된 차량외의 운전을 금한다.
- 3) 차량은 매일 브레이크, 핸들기어 및 기타 제동장치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, 라이트와 크랙션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4) 구내 운행시 속도는 8km/h 이하로 하고,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되며, 건널목에서는 횡단하기 전에 일단정지 하여 양편을 살펴야 한다.
- 5) 정차, 전향 및 커브를 돌 때는 정식 신호법으로 신호할 것이며, 앞의 차량과는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6)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하며, 키를 빼서 휴대하여야 한다.
- 7) 차량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8) 운전자는 절대로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.
- 9) 차량정비에 쓰이는 체인. 호이스트. 작키. 기타기구는 완전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
- 10) 휘발유 주유시는 엔진을 꺼야 한다.
- 11) 운전면허증, 차량검사증, 이동서비스 일지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- 12) 차량보안 용품인 안전표시판 스페어타이어, 공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- 13) 운전전이나 운전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의 일기상태, 노면상태를 미리 알아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 한다.
- 14) 과로한 운전은 피하고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며 통행인의 우선권을 지키고 과속운전을 금해야 한다.
- 15) 고속도로 상에서는 고속도로 안전수칙을 지키며, 특히, 눈, 비, 안개시는 60km/H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.
- 16) 제반 교통수칙을 엄수함을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.
- 17) 운행중 신호나 지시는 엄수하고 담배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 것.

■ 사고 시 조치사항

교통사고가 발생하면,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

○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

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(이하 '운전자 등'이라 함)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).

○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

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,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0조).

○ 안전한곳 이동처리

즉시 정차 후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(갓길)에 정차시켜야 합니다.

○ 사고신고

모든 사고는 경찰관서(경찰서, 파출소, 지서)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(112에 즉시신고, 규정은 3시간이내) 경미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사실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